

# TaxFlash



## 조세사면제도 – 일반이행규정의 변경

재무부는 2016년 9월 23일자로 No.141/PMK.03/2016(PMK-141)규정을 발표하여 기존의 조세사면제도의 일반 시행규정(No. 118/PMK.03/2016(PMK-118))을 개정하였다. PMK-141에 규정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고정사업장(PE)을 위해 요구되는 추가적인 첨부서류들

납세자는 조세사면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자산신고서(*Surat Pernyataan Harta untuk Pengampunan Pajak/SPHPP*)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고정사업장인 경우, 하기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본사 소재지 국가에서 제출한 최근 연간 세무 신고서의 사본
- 본사의 최근 연결 재무제표 사본
- SPHPP에 신고된 추가 자산이 본사의 세무 신고서와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

## 신고한 내국 자산에 대한 제한 규정 변경

PMK-141은 신고한 내국 자산에 대한 제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신고된 내국 자산은 조세사면 승인서(Surat Keterangan Pengampunan Pajak/SKPP) 발부 이후 이전 목적과 상관없이 3년간 해외로 이전할 수 없었다. 그러나 PMK-141에서는 납세자가 3년 이내에 신고된 내국 자산을 해외로 이전 및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고 있다. 현행 규정 PMK-141상 투자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아니하다.

## 토지 및 건물(부동산)의 명의 이전에 따른 소득세 면제

PMK-141에서는 부동산의 명의 이전에 따른 소득세 면제 조항이 추가되었다. 소득세 면제는 부동산 소유권 서류의 소유자가 대리인(nominee), 양도인(pemberi hibah), 사망인(pewaris) 또는 상속인 중 1인(상속된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동 면제 조항은 납세자가 부동산을 개발사로부터 구매하고 동 부동산의 명의를 이미 납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행정 절차

###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일부 정보 또는 문서들을 완료하기 위한 연장

PMK-141 시행령 50A(1).(e)항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2016년 9월 26일에 2016년 9월 30일로 끝나는 첫번째 제출 시한의 마지막 주 이내에 SPHPP 제출을 의도하였으나, 일부 필수 첨부서류들을 작성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였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가 명시된 No.PER-13/PJ/2016(PER-13)규정을 발행하였다.

PER-13은 DGT가 특정 필수 첨부자료(즉, 보통의 SPHPP첨부 요건들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만을 제출받은 경우에도 SPHPP의 수령증을 발행하는 것을 승인하고 있으며, 조세사면승인서(SKPP)는 이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방 과세당국에 의해 발행될 수 있다.

### 추가적인 절차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2016년 10월 31일까지 해당 정보와 문서를 완료하는 요청서를 송부하게 되며, 납세자는 최소한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요한 문서와 정보들을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요청서에 답변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답변서에 따라 보석금의 과소 또는 과다 납부를 초래하는 경우, PMK-141로 통합된 PMK 118의 요구사항을 여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는 SKPP는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되게 된다.

그러나, 납세자의 답변이 PMK -141로 통합된 PMK-118의 요구사항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SKPP는 무효로 간주되게 된다. 과세관청은 제출된 SPHPP 및 첨부서류들을 반송하게 되며,, SKPP가 무효가 되었음을 공지하게 된다. 납세자는 추가 제출기한 내에 첨부 서류와 함께 새로운 SPHPP를 제출할 수 있다.

### 2. SPHPP와 첨부서류의 제출

상세한 자산과 부채 목록은 SPHPP에 필수 첨부 서류 중 하나이다. 동 목록은 출력본과 파일형식 모두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 납세자는 파일 형식의 제출 의무가 제외된다. 이러한 예외 사항은 별도의 DGT 규정에서 규제 될 예정이다.

DGT는 별도의 규정으로 SPHPP의 제출 절차에 대하여 예외적인 상황을 다루기 위한 특정한 절차들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 a) 불가항력적인 상황(화재, 자연재해, 폭동 등)
- b) 제출기한 종료일의 네트워크 중단 또는 예외적인 상황(제출 시점의 장기간의 대기). DGT는 No.PER-14/PJ/2016을 발표하였으며, 동 규정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제출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납세자는 SPHPP의 제출 중이라는 임시 증서를 수령할 것이며, SKPP는 임시 증서 수령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발급되게 된다. SKPP가 발급된 이후에 추가적인 절차는 상기에서 명시한 절차와 유사하다.

### 3. 사후 보고 의무

PMK-141은 신고한 내국 자산과 송환한 해외 자산을 위한 보고 의무를 6개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조세사면 승인 이후 3년간 보고하여야 하며, 제출기간은 소득세신고서의 제출기한과 동일하다.

### 4. 납세자의 신청에 의한 SPHPP의 철회

개인납세자가 조세사면제도를 승인받았으나, 다음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SPHPP를 철회하게 될 것이다.:

- a) 소득이 기준 소득 금액보다 낮은 경우
- b) No.PER-11/PJ/2016에 따라 조세사면제도를 예외 대상인 증여나 상속으로부터 발생한 추가 자산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철회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제출할 수 있다.

- a) SKPP가 2016년 9월 23일 이전에 발행된 경우, 2016년 10월 30일까지
- b) SKPP가 2016년 9월 23일 이후에 발행된 경우, 발행일 후 30일 이내

철회신청서가 SKPP의 발급 이전에 제출된 경우, SPHPP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다.

철회 신청에 따라, SKPP와 SPHPP의 제출확인서는 무효로 간주된다. 납세자들은 조세사면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관련 조세사면제도의 혜택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 5. 보석금

보석금은 소득세와 동일하게 처리되며, 소득세 계산시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아니한다.

### 6. 특정 범죄행위의 경감을 위한 신고 정보의 사용

조세사면제도 하에서 공개된 정보가 마약, 테러리즘 및 인신 매매와 같은 초 국가적 조직 범죄(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에 대처하기 위해 권한있는 공무원들에 의해 입수되고 사용될 경우, 해당 공무원들은 법률적 우선권에 따라 그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조세사면제도 – 특정 목적 회사(SPV)에 대한 신규 규정

MoF는 2016년 9월 23일에 No.142/PMK.010/2016(PMK-142)를 발행하였으며, 이 규정은 특정 목적 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한 조세사면제도 규정 NO.127/PMK.010/2016의 개정 규정이다.

PMK-142는 해당 특정 목적 회사를 통해 간접 소유 자산을 신고할 때 특정 목적회사의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청산하여야 하는 요건이 현재 선택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다. 납세자가 특정 목적회사의 소유권 포기 또는 청산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산신고는 국내로 반입되지 않은 해외자산으로 간주되어 높은 보석금율인 4%, 6%, 10%가 적용된게 된다.

## Korean Business Desk Contact

정태훈 회계사 (taehun.jung@id.pwc.com)

박승찬 회계사 (park.seungchan@id.pwc.com)

##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id.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id.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id.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id.pwc.com

**Ali Widodo**  
ali.widodo@id.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id.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id.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id.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id.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id.pwc.com

**Dany Karim**  
dany.karim@id.pwc.com

**Deny Unardi**  
deny.unardi@id.pwc.com

**Engeline Siagian**  
engeline.siagian@id.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id.pwc.com

**Felix MacDonogh**  
felix.macdonogh@id.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id.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id.pwc.com

**Hanna Nggelan**  
hanna.nggelan@id.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id.pwc.com

**Hendra Lie**  
hendra.lie@id.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id.pwc.com

**Kexin Lim**  
lim.kexin@id.pwc.com

**Laksmi Djuwita**  
laksmi.djuwita@id.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id.pwc.com

**Mardianto**  
mardianto.mardianto@id.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id.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id.pwc.com

**Parluhutan Simbolon**  
parluhutan.simbolon@id.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id.pwc.com

**Runi Tusita**  
runi.tusita@id.pwc.com

**Ryosuke R Seto**  
ryosuke.r.seto@id.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id.pwc.com

**Soeryo Adjie**  
soeryo.adjie@id.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id.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id.pwc.com

**Tim Watson**  
tim.robert.watson@id.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id.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id.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id.pwc.com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id.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id.pwc.com

[www.pwc.com/id](http://www.pwc.com/id)

 [PwC Indonesia](#)

 [@PwC Indonesia](#)

 [@pwcindonesia](#)

 [PwC Indonesia](#)

 [pwc\\_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maria.purwaningsih@id.pwc.com](mailto:maria.purwaningsih@id.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6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